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양사 교육과정에 인증제도 도입 등》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258호)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040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경 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4
1. 영양사 교육과정에 인증제도 도입 (남인순의원안)	4
2. 영양사의 보수교육 연례적 실시 의무화 (김도읍의원안)	14

I. 개 요

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525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1. 5.
- (3) 회 부 일 : 2024. 11. 6.

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영양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보건의료인력임.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해당 자격증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영양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와 교육의 질 관리측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할 수 있도록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에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 2) 영양사 국가시험에 있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전공자는 졸업자로 간주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 3) 입학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등을 졸업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1호 신설).
- 4) 영양사 교육과정 신설 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대학등에 그 신청을 한 날부터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하여 그 대학등을 졸업한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2호 신설).

2.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604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29.
- (3) 회 부 일 : 2024. 12.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이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확대에 따른 인력 수급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 보건의료직종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사하는 영양사의 경우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II. 검토의견

1. 영양사 교육과정에 인증제도 도입 (남인순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등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으로 변경하여 교육과정에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 ----- -----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2. · 3. (생 략)

<신 설>

<신 설>

-----사람으
로서-----

-----갖추고 졸업한---

2. · 3. (현행과 같음)

②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
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식
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
람으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
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국가
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영양
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
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
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u> 2. <u>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졸업한 경우</u>
②・③ (생 략) 제26조(수수료) ① ~ ③ (생 략) ④ <u>제15조제2항</u>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6조(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5조제4항</u>----- ----- ----- ----- ----- -----

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u>제15조제2항</u>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u>제15조제4항</u>----- ----- ----- ----- ----- -----.
--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법에 따르면, 영양사는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¹⁾,

영양사가 되려면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²⁾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³⁾, 일정 교과목 및 학점이

1)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대학을 '대학등'으로 약칭함.

3) 이외에도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규정하고 있음.

수 요건을 충족한 자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률 및 영양사 면허소지자의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전국 104개가 있고, 2023년 기준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합격률은 72.5%임.

또한, 2020년 기준 전체 영양사 149,050명 중 의료기관 활동 영양사는 10,384명, 비의료기관 활동 영양사는 70,668명임.

<영양사 양성 대학 현황>

(단위 : 개)

계	대 학(4년 제)	전 문대 학 (3년 제)	전 문대 학 (2년 제)	산 업대 학	방 송통 신대 학
104	81	16	6	0	1

* 출처: 한국영양교육평가원(2024. 11. 기준)

<최근 5년간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 및 합격률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접 수인 원	응 시인 원(A)	합 격인 원(B)	합 격률(B/A)
2019	6,933	6,411	3,522	54.9
2020	7,196	6,633	4,657	70.2
2021	6,504	5,972	4,472	74.9
2022	5,899	5,398	3,629	67.2
2023	6,084	5,559	4,032	72.5

* 출처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도별 국가시험 합격률 통계

4) 식품·영양 관련 18과목·5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활동 유형별 영양사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A)	활동 영양사			취업률(B/A)
		소계(B)	의료기관	비의료기관	
2018	141,582	74,946	9,654	65,292	52.9
2019	145,606	78,223	9,939	68,284	53.7
2020	149,050	81,052	10,384	70,668	54.3

* 출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재구성(※ 국가통계포털은 2025년 업데이트 예정)

□ 한편, 2016년부터 (재)한국영양교육평가원에서 자율적으로 영양사 교육과정 평가인증이 운영(현재 19개 대학이 인증대학으로 선정)되고 있는바, 자율평가 인증제도 시행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효과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인증제도의 법적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의 낮은 합격률, 인구의 고령화·보건의료 및 식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영양사의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영양사 교육과정에도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질 관리를 통한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영양사 교육과정 평가인증(한국영양교육평가원) 현황>

평가연도	대학명	인증유형	인증기간
2016	충남대학교(4년제)	인증	2017. 3. 1. ~ 2025. 2. 28.
	한양여자대학교(3년제)	인증	2017. 3. 1. ~ 2025. 2. 28.
2018	계명대학교(4년제)	인증	2019. 3. 1. ~ 2025. 2. 28.
	단국대학교(4년제)	인증	2019. 3. 1. ~ 2025. 2. 28.
2019	강릉원주대학교(4년제)	인증	2020. 3. 1. ~ 2025. 2. 28.
	경남대학교(4년제)	인증	2020. 3. 1. ~ 2025. 2. 28.
	계명문화대학교(2년제)	인증	2020. 3. 1. ~ 2025. 2. 28.
	성신여자대학교(4년제)	인증	2020. 3. 1. ~ 2025. 2. 28.
2020	대구보건대학교(3년제)	인증	2021. 3. 1. ~ 2025. 2. 28.
	동아대학교(4년제)	인증	2021. 3. 1. ~ 2025. 2. 28.
	대구과학대학교(2년제)	인증	2021. 3. 1. ~ 2025. 2. 28.
	덕성여자대학교(4년제)	인증	2021. 3. 1. ~ 2025. 2. 28.

2021	공주대학교(4년제) 신라대학교(4년제)	인증 인증	2022. 3. 1. ~ 2026. 2. 28. 2022. 3. 1. ~ 2026. 2. 28.
2022	대구가톨릭대학교(4년제) 한양대학교(4년제)	인증 인증	2023. 3. 1. ~ 2027. 2. 28. 2023. 3. 1. ~ 2027. 2. 28.
2023	순천대학교(4년제) 안동대학교(4년제)	인증 인증	2024. 3. 1. ~ 2028. 2. 28. 2024. 3. 1. ~ 2028. 2. 28.
2024	창원대학교(4년제)	인증	2025. 3. 1. ~ 2029. 2. 28.

□ 참고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5)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인 의사·약사·간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에는 응시요건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요구하여 교육과정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인증 제도 관련 입법례 >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 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2조(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 6) 현행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

법률 제17208호(2020.4.7.개정, 2025.4.8.시행) 「약사법」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 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⁶⁾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다만, 개정안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인 대학의 의견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영양사 양성·배출 기대로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교육기관 인증을 진행하는 기관 및 인증 검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없이 해당 법률을 즉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영양사 면허시험제도와 영양사 보수교육 강화를 통하여 면허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 외,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인정기관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시 인정기관 지정이 지체되어 운영상 문제가 발생⁷⁾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양사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과 관련하여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⁸⁾.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영양사 교육기관의 인증평가제 의무화를 도입하자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관련 대학의 행정적·재정적 부담, 영양사 시험 응시 희망자에 대한 응시기회 제한, 현행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 및 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영양사 교육기관의 인증평가제 의무화를 도입하자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다음 사항 고려 필요 - (교육기회 박탈 우려) 재정이 열악한 지방 사립대, 전문대, 방통대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학과 축소 및 교육기회 박탈 우려 - (응시기회 제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의 졸업자 또는 향후 영양사를 지원하려는 학생의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

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2017.12.19. 개정, 2018.12.20. 시행)시 기존 대학들의 경우 시행 후 2년내(2020.12.20.)에 인증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기관 지정 자체가 지체되어(2020.8.11.) 기존 대학등이 1-2개월 남은 유예기간 내에 인증을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 이에 2020.12월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대학등의 인증 유예기간을 '인정기관 지정 후 2년(2022.8.11.)까지로 연장한 바 있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 후에 시행하였고, 약사의 경우에도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8) 제21대국회에서도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의안번호 제2116914호)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부의 반대의견(영양사에 대한 질적 수준 관리는 국가시험 제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영양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대학의 연구·교육에 경직성을 초래하고 대학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대학들의 반대)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음.

	- (현행제도 활용 가능성) 현행 영양사 면허시험 운영·관리 및 보수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고려 필요
교육부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 및 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현제도 영양사 면허 등으로 충분한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의 부담과 학과 축소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의견 제기
한국영양교육평가원·대한영양사협회·한국임상영양학회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영양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영양사 교육과정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인증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의사·간호사·약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타 보건의료인력과의 균형상 개정안에 적극 찬성
대학	찬성 : 서울대(전문성을 갖춘 영양사 양성·배출 기대) 반대: 부산대(이미 유효한 임상영양사 교육인증과 영양사 보수교육 강화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 경북대(교육기관 인증을 진행하는 기관 및 인증 검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없이 해당 법률을 즉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경희대(교과과목 학점 이수가 획일화되는 방식으로 인증제를 통한 영양사 교육 개선 반대), 광주보건대(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양사 면허 취득 제도로 전문성이 확보되므로, 추가적인 평가인증은 이중규제), 한국방통대(평가인증제 도입은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고,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은 인증받기 어렵게 되는 문제 발생) 기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인증을 받기 전까지 졸업생에게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만으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교육과정 질 담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배치됨), 이화여대(임상영양전문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의 경우 이미 지속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임상영양사 인증기관의 경우 영양사 교육기관 인증 면제 필요)

문 의 처

02)6788-5500

2. 영양사의 보수교육 연례적 실시 의무화 (김도읍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사하는 영양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u>보수교육</u> 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보수교육) ① ----- ----- ----- ----- <u>매년 8시간 이상의</u> <u>보수교육</u> 을-----.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영양사는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식단 작성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⁹⁾으로서,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9)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종사하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령」에 의하여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제1항,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영양사 보수교육 관련 규정>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수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민영양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영양관리 동향 및 추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이하 “보건소·보건지소”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⑥	(생략)

□ 참고로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2023년 12월 기준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 43,227명 중 41,028명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바 있음.

< 보수교육 이수 현황 >

실시년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이수자 수(명)	26,429	30,228	34,039	37,469	39,369	40,068	41,028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 한편, 개정안은 격년으로 실시되던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시수를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식품·영양 서비스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밀접히 관련된 영양사의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¹⁰⁾

- 대한영양사협회가 2023년 영양사 보수교육 이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수자 중 추가시간 교육 이수자가 9,629명(24%)으로 나타나 보수교육 시수 증가에 대한 수요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관련하여 보건의료 면허직종¹¹⁾인 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보건의료 면허직종 보수교육 >

구분	보수교육	근거 법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매년 8시간 이상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20.> [시행일: 2025. 6. 21.] → 의료인에서 개정 : 간호사 제외됨.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간호사	매년 8시간 이상	간호법 제16조(보수교육) ① 간호사는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⑨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령 미제정 ¹²⁾

10)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영양사 보수교육의 매년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하여 단체급식소 영양사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연 6시간 유지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음.

1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으로서 면허증이 교부되는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료법」 제5조), 조산사(「의료법」 제6조), 간호사(「의료법」 제7조), 약사(「약사법」 제3조), 한약사(「약사법」 제4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위생사(「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임.

자격증이 교부되는 직종은 간호조무사(「의료법」 제80조), 응급구조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보건교육사(「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임.

12) 의료법 내용을 따를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회신(2025.01.10.)이 있었음.

약사 한약사	매년 6시간 이상	약사법 제15조(연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은 매년 6시간 이상 으로 한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안경사	매년 8시간 이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 ①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시간·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 다만, 보수교육대상인 영양사 중 91.2%가 「식품위생법」에 의해 매년 6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인 바, 개정안과 같이 교육이 확대되는 경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들의 교육 부담이 가중¹³⁾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시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

<보수교육과 식품위생교육의 비교>

구분	「국민영양증진법」상의 보수교육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교육
교육대상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u>집단급식소</u>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u>집단급식소</u> 에 종사하는 영양사
교육내용	1. 직업윤리 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민영양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영양관리 동향 및 추세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홀수년도에는 최소 12시간 (보수교육 6시간과 식품위생교육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짝

13) 이와 같은 교육부담을 고려하여, 2024년 8월 1일 개최된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집단급식소 및 조리사·영양사의 현장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수년도에는 최소 6시간(식품위생교육 6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는 바, 개정안에 따를 경우 매년 14시간(보수교육 8시간과 식품위생교육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 식품위생교육 이수 현황 >

실시년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3
이수자 수(명)	26,655	30,451	33,586	36,189	36,468	38,127	37,426

※2022년부터는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됨.

- 보건복지부에서는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타 보건의료직종과 유사한 수준인 매년 6~8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보수교육 대상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영양사는 위생교육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 영양사들에 대한 교육과정 내실화 등 과도한 교육부담 완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관련 단체 의견 >

구 분	의견 내용
한국영양교육 평가원 / 대한영양사 협회	•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보건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직종으로서 법적 배치기준이 있는 직종의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 교육으로서 매년 실시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인력 각 직종의 보수교육은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영양사만 격년으로 보수교육이 시행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문 의 처

02)6788-5506

【참고1】	보수교육 관련 사항
--------------	-------------------

□ 보수교육과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상 차이점

<교육내용 규정 비교>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수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u>직업윤리에 관한 사항</u> 2. <u>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u> 3. <u>국민영양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u> 4. <u>선진 영양관리 동향 및 추세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u>식품위생법령 및 시책</u> 2. <u>집단급식 위생관리</u> 3. <u>식중독 예방 및 관리</u> 를 위한 대책 4. <u>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별 2023년 운영 과목>

구분	보수교육	식품위생교육
운영 과목	- 영양사 직업윤리 - 대상별 식단작성 및 메뉴 개발 노하우 - 영양관리 필수요건, 영양판정 - 활동 중심 영유아 영양프로그램 - 국민영양 관계법령의 이해 및 적용 - 교육·보건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 - 식사 계획부터 실천까지 영양사와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 - 암 임상영양치료, 핵심노트 -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양관리 - 만성질환 교육상담의 이해 - 만성질환의 동기면담 상담기법 - 학교 정보교육 우수사례 - 온라인교육? 어렵지 않아요 - 어린이·청소년 대상 영양상담 실제·비만을 중심으로 - 장애인의 영양적 특성 및 식사관리 - 군 급식 영양관리 가이드라인 - 만성질환 임상영양치료의 최신지견 - 영양사를 위한 맞춤형 셀프 스트레스 케어 - 영양사와 함께, Let's 마이나슈 - 영양·급식분야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식생활	- 영양사가 알아야 할 최신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 집단급식소 공정별 위해요소 중점 관리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절별 식중독 발생 원인 및 예방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 사용법 - 식품 중 미생물 규격 기준의 이해 및 동향 - 주요 식중독 발생 위험요인 관리 요령 - 감염병 역학조사 연보로 알아보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사례 - 식품안전물질 안전성 동향 - 화학물질의 습격 : 환경호르몬 - 집단급식 식재료별 검수 위생관리 - 집단급식 식품이물혼입 예방 및 관리 - 식품 및 기구·기기 세척제, 소독제 사용 이해

□ 2023년 영양사 교육 실태 (대한영양사협회)

<교육별 이수자 수>

영양사 보수교육 (홀수년도)		영양사 보수교육 (짝수년도)	
실시년도	이수자 수(명)	실시년도	이수자 수(명)
2011	26,429	2011	26,429
2013	30,228	2013	30,228
2015	34,039	2015	34,039
2017	37,469	2017	37,469
2019	39,369	2019	39,369
2021	40,068	2021	40,068
2023	41,028	2023	41,028

<2023년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평가항목	만족	불만족	합계
교육 내용의 적절성	98.7	1.3	100.0
교육 내용의 직무 기여도	98.7	1.3	100.0
교육 수준의 적절성	98.6	1.4	100.0
강의 스킬의 만족도	98.5	1.5	100.0
강의 불만족 이유	96.5	3.5	100.0
온라인교육 영상 수강 기능 만족도	97.7	2.3	100.0
온라인교육 영상 재생 오류 발생 시 민원처리 만족도	98.1	1.9	100.0

□ 타 보건의료 면허직종 보수교육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규정 사례>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시간·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2】

영양사 면허제도 개요 및 현황

□ **영양사 면허제도 개요**

- (영양사 면허제도) 1962년에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어 처음 법에 명시되었으며,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이관되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영양사 면허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 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 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고급영양학·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영양상담·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함한다) 3.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식품미생물학·실험조리·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 4.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급식경영학·식생활관리·식품위생학·공중보건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학과 영양·보건의료·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표1]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별표 1의2] <table border="1"> <tr> <td>학과</td><td>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td></tr> <tr> <td>학부(전공)</td><td>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td></tr> </table>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영양사 현황

- (영양사 면허 소지자) 17만 4,819명 ('23. 12. 기준, 보건복지부)
- (2023년 영양사 면허 취득자) 4,032명 ('24. 1. 기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영양사 근무 현황) 4만 3,227명 ('23. 12. 기준, 대한영양사협회)

집단급식소		비집단급식소	
산업체 ¹⁾	10,345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¹⁾	218
학 교 ²⁾	11,226	교육 및 연구기관 ⁶⁾	230
병 원 ⁴⁾	9,913	식품제조 가공업소 ⁶⁾	186
사회복지시설 ¹⁾	3,259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⁶⁾	154
어린이집 ⁵⁾	941	보건소 ¹⁾	815
유치원 ³⁾	2,199	행정직 공무원 ⁶⁾	131
경찰서 ¹⁾	15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⁷⁾	2,378
교 정 ¹⁾	99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⁷⁾	211
군 대 ¹⁾	188	기 타 ¹⁾	440
소방서 ¹⁾	135		
소 계	38,464	소 계	4,763
총 계		43,227	

1. 영양사 보수교육 이수자(대한영양사협회, 2023. 12. 기준)
2. 학교급식 실시현황(교육부, 2023. 기준)
3. 유치원급식 실시현황(교육부, 2022. 기준)
4.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0. 기준)
5.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23. 12. 기준)
6. 영양사 면허신고자 분석(대한영양사협회)
7. 식생활안전관리원

【참고3】	「식품위생법」 상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관련 규정
--------------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어.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101조제4항제4호	20	40	6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

리사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제공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